

어떤 하소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¹⁾ 제 이름은 반론보도입니다. 1980년 12월 31일생입니다. 올해로 서른일곱이네요. 노안이라고요?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좀 터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공중전은 몰라도 산전수전까지는 겪어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해 겨울은 무척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출생을 사람들은 썩 반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987년, 제 나이 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²⁾ 아직 어린 저를 남겨두고 야속하게도 먼저 세상을 뜨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이 나타나 저를 입양해주셨습니다.³⁾ 새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改名)했습니다.⁴⁾ 저의 원래 이름이 '정정보도'였거든요. 법원에서 그랬다지요. '자네의 역할은 틀린 기사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네. 그냥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하면 그만이지.'⁵⁾ 제 인생에서 개명은 인생의 목적 내지는 본분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우리 사회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였죠. 게다가, 제 분야에서 다른 경쟁자가 없었던데요. 덕분에 매년 저를 찾는 분들이 100단위로 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100, 그 다음 해에는 200, 또 그 다음 해에는 300 이런 식이었습나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밀어닥치는 일감을 처리하며 10대와 20대 초반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운명의 2005년을 맞았습니다.

2005년 1월 제게 한없이 자상하기만 했던 새 엄마가 저를 버리셨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 나이도 먹고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고 있어 당시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장성한 저까지 챙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도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어느 큰 집에 저를 맡기셨습니다.⁶⁾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집에서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집은 솔직히 멋졌어요. 낫설기는 했지만 집도 크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집안 살림이 뭐랄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살던 집도 좋긴 좋았는데,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았거든요. 그랬던 제가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에 저 말고도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들의 이름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아이들이니까요.⁷⁾

문득, 전에 살던 집이 그림네요. 셋집이었지만 그래도 인정받으며 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거든요. 역시 사람은 인정받으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 전 별 다른 존재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실의에 빠져 있던 제게 얼마 전 한 통의 격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보도된 기사에 대해 원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겐 여전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론보도 씨, 힘내세요!"⁸⁾

1) 반론보도청구권을 의인화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과 의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2) 반론보도 제도의 근거 법률이었던 언론기본법이 1987년 11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의미한다.

3) 언론기본법 폐지와 더불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줄여서 '정간법')이 제정되었다. 언론기본법에 있던 반론보도 관련 규정은 정간법으로 자리를 옮겨 그대로 유지되었다.

4) 1995년 정간법 개정 시 종전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 지칭되던 것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고쳤다.

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각색한 내용에 해당하는 판결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6)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종전에 민법, 정간법, 방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 데 모아, 체계적으로 규정화했다.

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조정사건 통계에 따르면, 정정보도 64%, 손해배상 30%인 것에 비해 반론보도는 4%에 그쳤다. 반론보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저조하지만 반론보도가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8) 2015년 8월 13일 선고된 한 법원 판결에서는 반론보도제도의 의의에 대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창창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2015카합181).